

# 핵심상품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5년 9월 2일

시행일 : 2025년 9월 22일

※ 이 설명서는 투자 광고·홍보 자료가 아니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성과 위험을 정확히 알려 투자자의 현명한 투자 판단을 돋기 위한 자료입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및 당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금융상품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1 기본정보

펀드명	디에스 Brave S 일반 사모투자신탁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K553F0EP2565
고난도 펀드	<b>미해당</b>		
펀드 종류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사모형, 혼합자산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투자자</li> <li>• 3억원 이상 개인/법인, 그 밖의 단체</li> </ul>	최소가입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억원</li> <li>• 전문투자자: 1억원</li> </ul> <p>※ C1 클래스: 50억 원</p>
신탁계약 기간	최초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	레버리지(차입 등) 한도	200%
판매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 설정 가능</li> <li>• 설정청구일의 제2영업일(D+1일) 기준가격 적용</li> <li>• 설정청구기준일 15시 30분 경과 후 설정청구 시 제3영업일(D+2일) 기준가격 적용</li> <li>• 다만,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최초설정일 기준가격 적용, 이익분배금 재투자시 규약 제29조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 적용</li> </ul>		
환매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일(휴일일 경우 익영업일)을 수익증권의 환매 청구 가능</li> <li>• 환매청구일의 제3영업일(D+2일)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D+5일) 대금 지급</li> <li>• 환매청구기준일 15시 30분 경과 후 환매청구시 차기 환매청구일에 환매를 청구한 것으로 간주</li> </ul>		
결산 및 이익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기간: 최초설정일(2025.09.22)부터 매 1년간</li> <li>• 이익분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은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현금 또는 수익증권으로 분배(자본시장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 유보 가능)</li> </ul>		
투자소득의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 중 비과세 대상 수익(상장주식, 장내파생상품, 벤처기업투자 손익)을 제외하고 과세 대상 수익(이자, 배당등)에 대해 신탁기간 종료일, 이익분배금 지급일, 환매일(상환일)에 원천징수함.</li> <li>• 개인, 일반법인 : 과세대상 수익의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li> </ul>		
자산운용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에스자산운용</li> <li>• 연락처 : 02-6296-7000</li> <li>• www.dsasset.com</li> </ul>	판매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한투자증권</li> </ul>
수탁회사	신한투자증권	사무관리회사	신한펀드파트너스
원금손실 발생여부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b>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b>		

<b>가입시 유의 사항</b>	<p>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설명자료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2. 설명자료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집합투자규약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3. 설명자료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4.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p> <p>5.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 또는 설명자료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6. 집합투자규약, 설명자료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 분쟁발생 시 당사 준법감시인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6296-7000). 또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
----------------------	--

## 2 상품의 내용

### 가.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 법 제249조의7제5항에 따른 경영참여목적으로 운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는 세부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식 롱바이어스(Equity Long-biased) 전략: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성장산업 및 기업에 대한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
  - 2. 롱숏 페어트레이딩 전략: 상관관계가 높은 두 자산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은 매수(롱), 고평가된 자산은 매도(숏)하여 방향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
  - 3. 파생상품 전략: 지수 및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외 파생상품을 통해 주식 롱온리(Equity Long-only) 전략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동시에, 시장 하락 구간에 포트폴리오를 해지(hedge) 하는 전략
  - 4. 이벤트 드리븐(Event-Driven): 수익 추구가 가능한 특정 이벤트(유·무상증자, Block Deal, 인수합병 등)를 중심으로 알파를 취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특별한 상황(Special situation) 이벤트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이벤트(Frequent event)에서도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합니다. 또한 시장상황에 대한 투자운용인력의 판단에 따라 순투자비중을 0(零, zero) 또는 그 이하로 상당기간 유지할 수도 있고, 금리 및 투자 기회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는 투자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1. 국내 지분증권 및 증권예탁증권(단,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합니다)

-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 3. 국내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 4.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합니다)
- 5.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금전 및 증권의 차입

## 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다)
  -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 3. 환매조건부 매수

## 다. 증증·복증 투자구조(타집합투자증권의 편입)

- 이 투자신탁은 타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지 않습니다. (ETF 제외)

## 라.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 산정 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의 산정

-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합니다. 기준가격은 기준가격 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그 기준가격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합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집합투자재산에서 부담합니다.
- ④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1항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시 제34조에 의한 성과보수를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 3 투자 위험

**가.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사모펀드에 해당하며, 아래 상세설명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6등급 중 1등급 (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유동성자산(비상장증권, 부동산, 자원 등 실물 관련 자산 등)을 30%이상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2.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자산(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자산유동화증권, 구조화 상품, 고난도 상품 등)을 20%이상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3. 해외자산을 20%이상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4.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li> <li>5. 상시적으로 레버리지(파생상품 매매, 담보제공, 금전차입 등)를 활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li> </ul>

※ 상기의 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위험요소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적어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도불능 위험	이 투자신탁은 상장 기업에 주로 투자하지만 시장 상황의 악화 또는 개별 기업의 이슈로 인하여 펀드 만기 이내 매도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금 손실 및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달라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b>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b>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b>전담중개업자 (Prime Broker) 파산 위험</b>	이 투자신탁은 주로 전담중개업자(Prime Broker)와 자산의 중개,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유동성 공급, 가격 평가의 공정성 확인, 신용공여 및 레버리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전담중개업자의 신용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담중개업자가 담보자산을 대여 또는 재담보 등으로 활용할 경우 전담중개업자 파산 시 대여 또는 담보자산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b>성과보수 지급 에 따른 위험</b>	이 투자신탁은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는 운용수익률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운용성과가 클 수록 더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기대하는 성과보다 낮은 수준의 투자성과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b>주식가격 변동위험</b>	이 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b>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b>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파생상품 투자위험</b>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b>롱숏 전략 위험</b>	이 투자신탁은 매수를 의미하는 롱전략(Long-Strategy)과 매도를 의미하는 숏전략(Short-Strategy)을 동시에 구사합니다. 그러나 숏(매도)전략에서 반드시 주식투자위험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차입매도/매수 종목에서 모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차입매도한 자산의 반환 시점에 그 자산의 가치가 예상과 달리 상승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차입 거래에는 담보물을 제공하게 되며 차입거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차입한 증권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롱숏전략의 사용으로 인해 매입 포지션과 공매도 포지션을 합산한 금액의 순자산 대비 비율이 주식투자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며, 차입매도 종목의 규모와 물량이 실제로 확보가 어려울 경우 추가수익을 위한 전략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b>이벤트전략 위험</b>	이 투자신탁은 실적변동, 인수합병, 구조조정, 정부규제 등 다양한 기업의 가치 변동과정에서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이벤트드리븐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벤트 전략은 집합투자업자에게 1)관련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과 2)이 이벤트로 인해 특정 기업과 관련된 변화 정도 예측을 요구합니다. 관련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거나 기대했던 정도의 파급효과가 없다면 투자신탁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레버리지 위험</b>	이 투자신탁은 자금차입 및 파생상품 등을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운용하므로 수행하는 운용전략에 따라 마진콜관리/부채비율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운용할 예정이나, 통제하기 어려운 시장위험이나 체계적위험의 발생, 운용전략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레버리지 투자한 부문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 펀드 수익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손실로 인하여 펀드가 청산될 수 있습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 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위에서 설명한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예상가능한 위험을 기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설정된 이후의 투자환경의 변화, 관련 제도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위에서 설명한 위험 외에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위험요소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대원금 100%까지 손실이 가능합니다.

#### 다. 고난도 펀드

고난도펀드 해당 여부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파생상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4 펀드비용(수수료·보수)

보수 및 수수료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3억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보수(연간)				1년	2년	3년	
				판매 보수	운용 보수	신탁 보수	일반 사무 관리				
보수 및 수수료	A클래스	1.000	1.575	0.500	1.000	0.050	0.025	7,725	12,450	17,175	
	C클래스	없음	2.075	1.000	1.000	0.050	0.025	6,225	12,450	18,675	
	C-I클래스		1.175	0.100	1.000	0.050	0.025	3,525	7,050	10,575	
	C-S클래스		1.085	0.010	1.000	0.050	0.025	3,255	6,510	9,765	
	C-W클래스		1.075	0.000	1.000	0.050	0.025	3,225	6,450	9,675	
	C1클래스		1.575	0.500	1.000	0.050	0.025	4,725	9,450	14,175	
(주) '3억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3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환매 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성과 보수	- High-Water Mark 방식으로 초과수익금액의 15%로 하며, 상세내역은 집합투자규약 제3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 환매에 관한 사항

증도환매	증도환매 불가	증도환매시 비용발생	증도환매 허용
			○
환매일정	<p><input type="checkbox"/> <b>매일</b>(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을 환매청구일로 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수익자는 환매청구일 15시 30분까지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15시 30분 이후에 환매 청구를 한 경우에는 차기 환매청구일에 환매를 청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수익자가 환매청구를 한 해당 환매청구일로부터 <b>제3영업일(D+2일)</b>기준가격을 적용하여 <b>제6영업일(D+5일)</b>에 지급합니다.</p>		
환매연기	<p>① 집합투자규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합니다.)는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② 1항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를 적용하며, 수익자총회 결의일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합니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판매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li> <li>2.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의견이 아닌 경우</li> <li>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판매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li> <li>⑤ 판매회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li> </ol>		
환매연기 사유	<p><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li> <li>②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li> <li>③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ol> <p><input type="checkbox"/>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li> <li>②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li> <li>③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li> </ol> <p><input type="checkbox"/>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input type="checkbox"/>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환매청구 금액이 환매청구일 현재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상기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제22조~제24조, 제3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단,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수익자 전원 동의 혹은 총 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오니, 이점 투자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원 동의 사항
    1. (제23조 제4항) 환매대금을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
    2. (제28조 제2항)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31조 제2항) 상환금 등을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
    4. (제39조 제1항 제1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단, 이때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
  - 총 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사항
    1. (제38조 제1항 각 호) 주된 투자대상자산, 투자전략 및 운용제한 등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경우, 신탁업자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때,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
    2. (제38조의2 제1항 각 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핵심상품설명서에 반하여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 과실로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때
    3. (제38조의2 제3항) 수익자가 제3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을 요청할 때

## 7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 또는 민원이 있을 경우 디에스자산운용 (☎ 02-6296-70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a href="http://www.fcsc.kr">http://www.fcsc.kr</a> ) 또는 국번없이(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고객권익 보호사항)	<input type="checkbox"/> 본 상품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있음을 고객이 서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

	<p>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최초 수수료 납부한 날 중 늦은 때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가능하며,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합니다.</p>
--	--

## 8 펀드의 종료 및 해지·해제

<b>투자신탁의 해지</b>	<p><input type="checkbox"/>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li> <li>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li> </ol> <p><input type="checkbox"/>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li> <li>2.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li> <li>3. 자본시장법 제249조의9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li> <li>4.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li> </ol>

## 9 기타

<b>운용인력</b>	<p><input type="checkbox"/> 이 투자신탁은 주식운용1본부 주식운용1팀에서 운용하며, 아래의 책임투자운용인력이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 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책임투자운용인력의 경력</p>					
	<table border="1"> <thead> <tr> <th>이름</th> <th>직급</th> <th>주요경력</th> </tr> </thead> <tbody> <tr> <td>김창진</td> <td>상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li> <li>- NH투자증권 기업분석2팀</li> <li>- 키움투자자산운용 리서치팀</li> <li>- 디에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li> <li>- BNK자산운용 주식운용1팀</li> <li>- (현)디에스자산운용 주식운용1본부</li> </ul> </td></tr> </tbody> </table>	이름	직급	주요경력	김창진	상무
이름	직급	주요경력				
김창진	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li> <li>- NH투자증권 기업분석2팀</li> <li>- 키움투자자산운용 리서치팀</li> <li>- 디에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li> <li>- BNK자산운용 주식운용1팀</li> <li>- (현)디에스자산운용 주식운용1본부</li> </ul>				
<b>리스크관리 방안</b>	<p><input type="checkbox"/> 보유자산별 특성에 따른 유동성위험 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법규 및 내부관리방안에서 설정된 수준을 초과하거나 만족하지 못할 경우, 즉시 해소 또는 유동성보강 등 대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험관리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펀드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li> </ol> </li> </ol>					

	<p>나. 위험 요인별로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향을 설정</p> <p>다. 고객에 대한 선량한 자산관리자의 의무 충실 이행</p> <p>2. 위험관리 정책</p> <p>가. 운용자산관련 투자 및 위험 관리 규정 제정 및 운영</p> <p>나. 위험 관리를 위한 별도 시스템(신한아이타스, 사내 ERP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p> <p>다. 투자 및 리스크상 이슈 발생시 위기 경보 수준별로 대응</p> <p>라. 비상장증권은 펀드 편입 적정성(투자목적, 만기구조, 유동성 등)에 대해 사전 리스크 검토(승인) 후 투자심의위원회 개최(투자검토보고서 필수)</p> <p>마. 유동성위험이 높은 개방형 펀드의 경우, 매년 1회 유동성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환매대응력에 대한 점검과 필요 시 유동성 보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실시</p>
<b>주요 비상대응계획</b>	<input type="checkbox"/> 당사는 주요 비상상황 및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위기경보 수준(정상, 주의, 심각, 위기)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의 : 위기상황 내용 파악과 모니터링 실시</li> <li>2. 심각 : 실무회의 소집 및 위기상황 대응전략 보고</li> <li>3. 위기 : 주요 경영진 보고 및 펀드현황에 대한 상시 체크</li> </ol>
<b>설명서 작성 담당자</b>	마케팅본부 방정민 대리(02-6296-7062)